

의안번호	제395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0년 3월 30일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95

제출연월일 : 2020년 3월 3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사유

- 청구인대표 김도경 등 9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30일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15조제9항 및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농민수당 정책 시행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 농민수당 정책수립의 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 지원 및 홍보

다. 농업인의 참여 (안 제4조)

- 농업인은 공익적가치를 인식하고,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및 농생태계의 보존 등 노력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

- 도지사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설치. 위원회는 지급대상자 결정, 지급시기 및 지급액, 각종 교육 및 홍보 등을 심의·의결

마. 지급대상 (안 제8조)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충청북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범위 결정

바. 지급방법 및 지급액 (안 제9조)

- 농민수당은 지급대상에게 월 10만원의 금액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단 시군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충북관내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 도지사는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사.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안 제10조)

- 농업인은 지급신청서를 해당 이장에게 제출하고 이장은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후보 결정
-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결정
- 농업인은 충청북도에서 주최하는 농민수당 관련 마을교육을 이수한 뒤 농민수당을 지급받음
- 주소지와 영농구역이 다른 경우 영농구역의 마을을 선정하여 지급신청서 제출과 마을교육을 이수 할 수 있음.

아. 지원제외 (안 제11조)

- 신청 전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 신청 전연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농민
- 신청 전연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민
- 신청 전연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 받은 농민

조 례 안 : 불임

관련법령 발체 : 불임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9조 및 제46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중에 농업인을 말한다.
4. “농민수당”이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민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참여) 농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관리에 노력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2. 농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3. 농민수당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으로 구성하며, 한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충북도청을 대표하는 사람 3명
2. 도의원 2명
3.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5명
4. 도지사와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농업분야 전문가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참가하지 않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농민수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지급대상) ① 농민수당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급대상을 근거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지급범위를 정한다.

제9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① 농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에게 월 1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해당 충청북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충청북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충청북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민수당 지급신청서를 해당 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신청자의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농민이 결정되면 시장·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지급대상 농업인은 충청북도에서 주최하는 농민수당 관련 마을교육을 이수한 뒤 농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⑥ 지급대상 농업인 중에서 주소지와 영농구역이 다른 경우 영농구역의 마을을 선정하여 지급신청서 제출과 마을교육 이수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1.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2. 신청 전(前)연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민
3. 신청 전(前)연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민
4. 신청 전(前)연도에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민

제12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민수당 지급을 중지·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할 구역 밖으로 진출하는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⑪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 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청구인 김도경외 9명이 주민 21,586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 수리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2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농민수당에 대한 도내 시장·군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막대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1>
2. 농업·농촌 공익기능에 대한 역할은 국가·농민·소비자 모두에게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농업인만의 보상적 수당 요구는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직능별 수당양산·비농업계 조세저항도 우려됩니다. <참고2>
3. 주민청구 조례에 의하면 농업경영체(159천명) 기준으로 연 1,9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농가(7만5천)로 환산하여도 연 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집행부에서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3>
4. 농민수당은 복지부 사회보장심의 대상으로 현재 지자체별로 모두 조건부협의를 되었으며, 중복성·형평성·과도한 재정 등으로 시범사업실시 후, 재평가를 받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4>
* 농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시행(‘20.5.1)전까지 시범사업 추진(복지부 사회보장심의 결과전북)
5. 뿐만 아니라 농민수당은 전 농업인이 지급대상으로 법적요건과 경영체 등록이 되면 지급 대상자로 수당 맞춤형 농업인의 양산, 경영체 쪼개기 등 부정수급 및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참고5>
6. 또한, 청구된 조례안은 대부분 농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참고6>

부의된 농민수당 조례안은 현금성 복지사업으로 한번 실시하게 되면 중단도 어렵고, 지속적인 예산증액 요구로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도정 주요현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조례제정에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비 용 추 계 서

1. 조례명 :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① 안 제8조(지급대상)

- 농민수당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다음 각 호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2. 1호 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
- 도지사는 제1항의 대상을 근거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년도 지급범위를 정한다.

② 안 제9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 농민수당은 제9조의 지급대상에게 월 1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
- 도지사는 농민수당을 충청북도의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 수단 지급 단 시군 관내 사용 가능 수단이 없을 경우 충청북도 관내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 다르게 정할 수 있음

3.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민수당은 조례안 제8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지급

※ 대상인원(2018년 기준)은 158,962명*으로 연간 120만원(월10만원) 지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된 충북 농업인 수

-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 역할을 하는 농업인에 대한 농민수당 지원을 위해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

나. 추계결과 (5년기준)

① 농업경영체 기준: 9,540억원 소요 예상 ('20 ~ '24)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9,540	1,908	1,908	1,908	1,908	1,908
국 비	-	-	-	-	-	-
지방비	9,540	1,908	1,908	1,908	1,908	1,908

※ 산출내역

- 2020년 소요비용 : 농업인 158,962명 × 120만원 = 1,908억원
- 2020년 ~ 2024년 소요비용 : 1,908억원 × 5년 = 9,540억원

② 농가기준: 4,500억원 소요 예상 ('20 ~ '24) 《②추가추계》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4,500	900	900	900	900	900
국 비	-	-	-	-	-	-
지방비	4,500	900	900	900	900	900

※ 산출내역

- 2020년 소요비용 : 농가 75,000명 × 120만원 = 900억원
- 2020년 ~ 2024년 소요비용 : 900억원 × 5년 = 4,500억원

다. 재원조달방안

- 농민수당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으로서 자체재원으로 도입하기에는 도 및 시군의 재정여건상 어려운 입장임

4. 작성자: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이준경

참고 1

농민수당에 대한 시·군 의견수렴 결과

구 분	총 합 의 견
청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 부담, 사회적 약자의 상대적 소외감, 시민 공감대 필요 ▶ 공익적 기능을 위한 농업인들의 보편적 지원요구는 타당 ▶ 공익 직불제 개편에 따른 중복성 문제 등 종합적 검토 후 도입
충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 부담 (향후 타 분야로 추가확대 예상) ▶ 농민수당 추진 전 타 사업들과 중복지원 여부 검토 ▶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 시민 공감대 선행필요
제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 부담, 시민 공감대 필요 ▶ 농민수당 사업평가와 사회보장제도 중복여부 검토필요
보은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대한 예산 투자로 지자체 재정마련 지난 ▶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 시민 공감대 선행필요
옥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대한 예산 투자로 지자체 재정마련 지난 ▶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 시민 공감대 선행필요 ▶ 공익 직불제 개편에 따른 중복성 문제 등
영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대한 예산 투자로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 시민 공감대 선행필요
증평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 농업인에 대한 수당성격의 복지는 중앙부처에서 시행요망
진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대한 예산 투자로 지자체 재정마련 지난 ▶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 시민 공감대 선행필요
괴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대한 예산 투자로 지자체 재정마련 지난 ▶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 시민 공감대 선행필요
음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대한 예산 투자로 지자체 재정마련 지난 ▶ 공익 직불제 개편에 따른 중복성 문제 등
단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 ▶ 공익 직불제 개편에 따른 중복성 문제 등

참고 2

농민수당(선별적, 조건적) 국민·도민공감대 부족

□ 공익적 가치의 정의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의 정의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3조9항)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말함
- “국가지자체·농업인·소비자의 책임”의 정의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음.
 - (농업인·농촌주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노력하여야 함.
 - (소비자)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문제점

- 공익적 가치의 책임과 실천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업인, 소비자 모두 대상.
→ 농민만 지원하는 수당논리는 거부감 및 국민·도민 공감대 부족
- 농업인에 대한 과세가 없는 상태에서 수당지원은 비농업계 조세저항
→ 소상공인수당, 소비자수당, 예술수당, 기자수당 등 직능별 수당 양산우려
- 농정예산 삭감 및 조정 → 기존 수혜대상자 반발, 국비 예산확보 불가
- 농정예산(시군비 포함) 5,220억원 중 국비부담(1,984억), 시군비 등(2,086억)
국비매칭 도비(632억)을 제외하면 가용 순도비(518억원)으로 재원 부족
※ 농민수당 지급시 농업경영체(159천명)/1,908억원 소요예상

□ 검토의견

-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국민·도민 공감대 형성 및 지지가 필요
- 농업인들의 공익기능에 대한 보상적 수당요구 타당성 논리 약함
 - 농업인 스스로 공익기능 유지·실천약속 등이 우선 선행 공감되어야 함
- ※ 참고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8) ‘기본소득제 논의동향과 농업부문 시사점’

참고 3

농민수당 소요예산 추정액 분석

□ 현 황

- 주민청구조례(안) 농민수당 요구액 : 연120만원/농업인(개인당)
- 농정예산(비편제예산 포함) : 5,220억원(도비 1,150억원)
 - 농업경영체(159천명)기준 : **연간 1,908억원 소요(농정예산의 37%)**
 - 농가(7만5천명)기준 : **연간 900억원 소요(농정예산의 17%)**

□ 소요 예산액 (추정)

① 농업경영체수 기준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농업경영체수('18기준)	158,962	160,552	162,158	163,780	165,418
추정예산액(억원)	1,907	1,927	1,946	1,965	1,985
경영체 증가율	0%	1%	1%	1%	1%

※ 농업경영체 신규가입 및 분리 등으로 농업경영체수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

② 농가수 기준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농 가 수('18기준)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추정예산액(억원)	900	900	900	900	900
농가수 감소율	0%	0%	0%	0%	0%

※ 산출기준(7만5천)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원농가(105,905농가)의 70%적용

□ 검토의견

- 농민수당 지급대상에 따라 최대 1,908~900억원의 막대한 예산 소요
- 도 및 시군 지자체 국비지원 없이 별도 재원마련 사실상 불가능
 - ※ 특히, 청주시는 대상 농업경영체수가 26% 정도로 조례 통과시 예산확보 지난

참고 4

농민수당 사회보장 심의관련

□ 현 황

- 농민수당 (현금성복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심의대상
- 관련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제2항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위반시 지출한 금액내 교부세 감액 도는 반환

□ 문 제 점

- 농민수당은 '20년 공익직불제 시행전까지 시범실시 조건으로 협의
 - 사업목적(농업·농촌 공약기능 증진) 같은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의 중복문제
- <지급예시> (단위 : ha/만원)

구 분	면 적	당 초	변 경			비 고
		기존직불	계	공익직불	농민수당	
밭직불	0.4	22	240	120	120	중복제기가능 (보건복지부)
쌀(진흥)	4.0	490	905	785	120	
쌀(비진흥)	4.0	270	634	514	120	

□ 검토의견

- 전남·북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조건부 협의' 사항으로 재평가 필요
- 농민수당은 재정에 부담 주는 우려스러운 사업으로 판단 “조건부 협의” 한 사항으로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협의 원안 뒷면 참조)

< 사회보장심의 타도 동향 >

- 전남·북, 해남·화순·함평 등 기초시군 : 조건부 협의결과 득함
- 협의결과
 - ① 농식품부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중복문제 제기 가능
 - ② 농식품부 공익형직불제 2020년 시행전까지만 시범사업 추진
 - ③ 향후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마련 근거에 의한 사업평가로 지속여부 판단

※ 농업인들은 조건부 협의된 사항을 모르고 계속해서 받는 것으로 인식

전북 보건복지부 농민수당 심의결과

검토결과	<p>협의완료 (조건부) ※ 2019. 9. 16. 복지부 통보</p>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농업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사업 추진 필요성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사업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을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에 대한 민원 대응 필요 ○ 현재로서는 중앙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없으나, 공익형 직불제 시행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중복 문제 제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광역/기초 단위 유사 정책 도입 시 광역-기초 간 공식적 합의 등을 통해 제도 간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일원화 필수 * 기 협의완료한 기초 지자체(고창) 사업은 광역도 사업 도입('20년) 전까지만 시행 후 폐지하고, '20년 도 사업과 통합시행 예정(시군업무협약 완료) ○ 재정여건 대비 재정 부담이 상당한 사업으로 향후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수준별 또는 경영규모별 지원수준의 조정, 관내유사 제도 통합 조정 등 등 ○ 농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시행('20년(안)) 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아래 근거자료*에 기반한 사업평가를 토대로 사업 지속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현재 지자체에서 설정한 성과지표를 사업 목적(농가 소득안정, 농촌인구감소 최소화, 공익적가치 증진 등)에 부합하도록 재설정하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가능한 지표로 수정보완하여 적용 (집행률, 참여율, 만족도 등은 지양) ②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적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소득수준별 농가/비농가 현황, 경영규모별 농가 소득수준 등 객관적 통계 자료 ③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도 도입 이전·이후 재정여건변화 및 타 사회복지 또는 농어촌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 등 현황 ④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간 통합·조정 필요성

참고 5

농민수당 타 지자체 부작용 사례

□ 현 황

- 「농업인, 농가, 소농기준」 법률적 재정립 필요
 - (농업인) 1천㎡이상 경작, 판매액 120만원, 90일이상 영농종사 중 하나
 - (농가/ 소농기준) 농업·농촌 공약가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5월)
- 농민공익수당 농식품부 정책사업 추진 건의(전북)

□ 문 제 점

- 농업인의 정의가 단순하여 누구나 요건만 맞으면 농민수당 지급가능
- 농민수당 재원확보가 어려워 농식품부 국비지원 사업 정책건의
- 신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부농들의 농업경영체수 쪼개기 등 부정수급

연 도	2018			2019		
	전라남도	전남 강진군	전남 해남군	전라남도	전남 강진군	전남 해남군
경영체수	219,465	8,181	14,617	221,659	8,672	15,640
경영체율(%)	100%	100%	100%	101%	106%	107%

※ '19년 전남도 농업경영체수 평균 1% 증가하였으나, 강진(6%), 해남(7%)증가
⇒ 자료출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농민수당 지급수단인 지역화폐로 현금화(카드깡) 추진 (해남, 강진 등)
- 강원도 농민수당 추진 전부터 지급액 상향요구 (60만 → 120만)
- 농민수당 재테크 수단 변질 (언론보도/600만원 땅사면 농민수당 년60만원)

□ 검토의견

- 농업인·농가·소농 재정립 필요, 농민수당 부작용 발생으로 사회혼란 야기

중앙및지자체 정책사업 추진 계획 (12.29. 권역별 정책사업 추진)

농민공익수당 중앙부처 정책사업 추진 건의

시·도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유용열	063-280-2617

◇ 농민공익수당의 중앙부처 정책사업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여 전국 농업·농촌의 균형발전 모색

□ 개 념

- 농민공익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제고하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도입하는 “공익형 직불제”와는 다른 개념임

□ 필 요 성

- (농촌 현실) 농가인구 고령화, 청년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업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농촌마을 공동화로 지역사회 유지가 위협받고 있음
- (인식 확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 '07) 53.6% → '10) 55.9% → '17) 70.0% → '18) 7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법적 의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고(제6조),
 -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9조)

□ 현 황

- (정부) 2017년부터 전개된 헌법 개정 운동의 결과로 '18.3월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포함
 -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중심의 정책 전환 위해 '19.4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 (지방) 지역별로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상이*한 지자체 발의 조례와 주민청구 조례가 함께 제시되고 있음

구 분	지자체 발의 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
지급대상	농가	농업인
지 급 액	연 60만원	연 120/240만원

- 광역지자체 중 전북과 전남, 기초지자체 중 고창, 해남 등이 조례를 제정, 이외 다수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 추진 중
- 또한, 광역지자체 중 전북, 전남, 경남, 충북, 충남, 제주 등에서 주민 조례가 청구되어 절차 진행 중
- (전북) '19.7월 도·시군 업무협약식과 '19.10월 공포된 조례를 근거로 2020년 사업 시행을 위해 예산 확보 등의 절차 진행 중

□ 건의사항

- (정부 사업추진) 중앙정부 사업을 통한 국가사업으로 전환 필요
- (지원기준) 지자체 농어업 비중과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국비 지원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 】

참고 6

농민수당 관련 조례(안) 도별 비교표

구분	우리도 조례(안)	타 도 (충남,전북,전남)	차 이 점
발 의	주민발의	①의회 수정발의(충남) ②정행부 발의(전북,전남) * 주민발의 조례제정 없음	①충북 : 주민청구조례(4.1 도의회 부의예정) ②타도 :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제정 없음
목 적	충북거주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충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전남)	-
도지사 의 책 무	① 농민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민수당 정책수립에 농업인의 참여 최대한 보장~ 마을활동지원~ 도민에게 널리 알림	①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북) ②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전북)	①충북 : 도지사의 책무 (~해야한다) ②타도 : 도지사의 책무 (~노력한다,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충청북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둔다.	①최동(충남,전남) ②없음(전북)	①충북 :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타도 : 심의위원회를 둔다(충남,전남), 없음(전북)
위원회 구성	①13명 이내로 구성, 한 성별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위원회 위원 (광역의원 2명 포함)	①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전남) ②위원회 구성 없음(전북) ③위원회 위원 (광역의원 없음)(충남,전남,전북)	①충북 : 위원회 구성인원이 최농업인 성향으로 공정성 결여 ②타도 : 위원회 구성인원이 행정성·공정성 갖추(5:5)
지급대상	농민수당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충청북도에 주 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농업인개별단위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농어가(충남) 보조금 지급신청년도 기준 2년 전부터 주소가 전리북도 내에 있는 농가(전북)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전라남도 에 주소를 둔 농가(전남) * 농어가단위 (충남,전북,전남)	①충북 :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농업인 개별단위 지급 ②타도 :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농어가단위 지급
지급방법 및 지급액	① 월 10만원/년 120만원 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충남,전북,전남) - 월5만원/년60만원(충남,전북,전남) ②상·하반기 2회지급(전남),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전북)	①충북 : 농민수당 지급액 월 10만원/년120만원 * ②예외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②타도 : 농민수당 지급액 월5만원/년60만원 * 타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지급절차 등	지급대상 농업인은 충청북도에서 주최하는 농민수당 관련 마을교육을 이수한 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다.	-	①충북 : 대상자는 농민수당 관련 마을교육 이수 후 수당수급 ②타도 : 없음